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입주기업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발급번호		발급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근무기간	
	주소	전화번호	
	입주기업 확인사항	근무부서(파견자 등은 원소속부서) 담당업무	입주(예정) 사업장[] 입주(예정) 종사자[]
소속기관	기관명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8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색상이 어두운 칸을 작성합니다.
 - “발급번호”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명-일련번호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입주(예정) 사업장[]”에 √표시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이미 입주한 경우) 소속 종사자에 대해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경우) 입주예정인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하지 않는 종사자가 있거나, 입주하지 않는 사업장 내에도 담당업무상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 종사자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여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를 합니다.
 - “입주(예정) 종사자[]”에 √표시가 된 종사자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연구원 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기업과 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체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